제303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4. 4. 30.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미 래·복 지 위 원 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4년 4월 30일 전문위원 권 오 숙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2024 - 50

나. 발 의 자: 김지수 의원 외 6명

다. 발의일자: 2024년 4월 22일

라. 회부일자: 2024년 4월 24일

2. 제안이유

저출생 현상의 심화로 인한 아동수 감소에 따라 관내 어린이집 폐원이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어린이집이 갑작스럽게 폐지되거나 일정기간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에 구청장이 보육 공백을 방지하고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령 용어 정비 (안 제2조)

나. 어린이집 폐지 등에 따른 조치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8조의2)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나. 협조부서: 가족정책과

다. 입법예고: 2024. 4. 23. ~ 4. 29.

5. 검토의견

가. 개정취지

○ 저출생 현상의 심화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원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어린이집이 갑작스럽게 폐원하거나 일시적으로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에 보육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 개정내용

○ **안 제2조에서** 상위법인「영유아보육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서 사용하는 '영유아'의 연령 기준 등 용어를 정비하였음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u>6세 미만</u> 의 취학 전	1 <u>7세 이하</u>
아동을 말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	3. "어린이집"이란 영유아의 보육
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	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이
<u>설을 말한다.</u>	<u>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u>
	•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 **안 제8조의2에서** 어린이집이 폐지되거나 일정기간 운영이 중단되는 등 아동의 보육 공백이 우려되는 때에 <u>구청장이 영유아의 권익 보호를</u>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조치하도록 하는 책무를 신설하였음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8조의2(어린이집의 폐지 등에
	따른 조치) ① 구청장은 어린이
	집이 폐지되거나 일정기간 운영
	이 중단되는 경우 영유아의 보
	육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u>야 한다,</u>
	② 제1항에 따른 영유아의 권익
	보호를 위한 방안의 세부사항은
	<u>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u>
	른다.

다. 종합의견

○ 본 개정안은 <u>심각한 저출산 상황¹)</u>으로 아동수가 감소하여 어린이집이 갑작스럽게 폐원하거나 일시적으로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에 구청장이 관련 방안을 마런하도록 하여 영유아의 권익 보호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

⁻ 합계출산율: 한 여자가 가임기간(15 ~ 49세)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 지표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출산율	1.187	1.205	1.239	1.172	1.052	0.977	0.918	0.837	0.808	0.780

[※] 서울 강서구 합계출산율: 0.59명(2022년 통계청 인구동향 조사)

^{1) 2022}년 출생통계(국가승인통계 제10103호_통계청)

- 최근 4년간 관내 민간·가정 어린이집 현황²⁾은 '21년 224개소에서 '24년(4월 기준) 156개소로 약 30.3% 감소하였으며, 원아 감소에 따른 재정 및 운영의 문제 등으로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폐원³⁾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어린이집이 갑작스럽게 운영을 중단하게 되는 경우 아동의 보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토록 하는 본 개정안은 양육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보육 확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2) 관내 어린이집 현황

연도	계	국공립	민간	가정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협동	직장
2021년	341	93	88	136	1	8	15
2022년	312	92	76	118	1	8	17
2023년	296	97	70	102	1	8	18
2024년 (4.5.기준)	281	100	62	94	1	8	16

[※]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최근 4년간 약 30.3%감소(224개→156개)

3) 관내 어린이집 폐원 현황

연도	계	국공립	민간	가정	사회복지법인	협동	직장
2021년	39	_	12	25	1	1	_
2022년	34	1	11	21	_	_	1
2023년	35	1	11	22	-	_	1
2 024년 (4.5.기준)	14	_	4	8	-	_	2

[※] 폐원사유: 별도 관리되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원아감소, 운영(재정)문제, 임대차계약만료, 매각, 국공립전환, 재개발 등임.

참고

비용추계서 첨부

갑작스러운 폐원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비용추계서

1. 비용의 발생요인 : 갑작스러운 어린이집 폐원

2. 비용추계의 전제 : 갑작스러운 어린이집 폐원으로 인한 비용 발생

※ 갑작스러운 어린이집 폐원으로 전원 조치시 발생되는 비용

- 필요경비(입학준비금): 가방값, 원복비, 입학금 등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합계
세출	어린이집 운영지원	5,000	5,500	6,050	6,655	7,320	30,525

※ 출산율 감소로 인해 연 10% 증액 계상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강서구 어린이집 일반 폐원 현황

(단위: 개소)

년도	2022년	2023년	2024년 (3월말 기준)	비고
계	34	35	14	

2) 강서구 어린이집 갑작스러운 폐워·휴워 현황

(단위: 개소)

년도	2022년	2023년	2024년 (3월말 기준)	비고
계	0	0	1 (전원조치 33명)	

3) 사업비 (총 5,000천원 / 구비 100%)

- 지원대상 : 약 50명

50명 x 100,000원 x 1회 = 5,000천원

※ 서울시 보육정책위원회 결정으로 매년 필요경비(입학준비금) 수납한도액 결정

- 2024년 수납한도액 연 100.000원

5. 재원조달 방안 : 구비 100%

(단위 : 천원)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구비	5,000	5,500	6,050	6,655	7,320	30,525

6. 작성자 : 생활복지국 가족정책과(담당자 : 행정7급 김정민 2600-6793)

참고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 복지서비스를 말한다.
- 3. "어린이집"이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
-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시행일: 2024. 8. 7.] 제2조

제4조(책임)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